

『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추은희 의원 외 17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의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대책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- 신고·지원센터의 설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(안 제6조 ~ 제7조)
-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(안 제8조)
-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징계 등 불이익 처분(안 제9조 ~ 제10조)
- 보복행위 허위신고 및 협조자 보호(안 제11조 ~ 제12조)
- 실태조사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(안 제13조 ~ 제14조)

4. 검토의견

-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 및 공공분야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근절 요구 등으로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갑질 개념 및 신고자 보호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음.
이후 2019년 2월,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,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‘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’이 배포되었음.
- 2022년 1월 집행부와 의회의 인사권 분리로, 의원과 의회 공무원 대상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본 조례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,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,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,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,
-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담당자 지정, 인력 및 지원센터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세부 계획 등으로 규정지을 필요가 있음.
-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,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넘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, 우리 의회의 특성에 맞는 자체 대책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5. 참고사항

○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내 용
광주광역시 의회	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하여야 함. - 현재(2023. 2. 6. 기준) 미설치 - 담당자 미지정 * 조례 시행일 : 2022. 12. 30.
전라북도의회	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하여야 함. - 현재(2023. 2. 6. 기준) 사무처 내 행정설치 (별도설치x) - 담당자 : 2명(기본 1명이되, 담당자도 갑질 신고 대상이어서 예비 1명 추가 지정) * 조례 시행일 : 2022. 4. 15.
상주시의회	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음. - 현재(2023. 2. 6. 기준) 미설치 - 담당자 미지정 * 조례 시행일 : 2022. 10. 26.